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0.

발 의 자 : 이용우 · 맹성규 · 박 정
김남근 · 장철민 · 이주희
조계원 · 김태선 · 정혜경
이학영 · 박홍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전자 재조합, 세포융합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·육성된 농·축·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(식품첨가물 포함)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(GMO)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표시의무자,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이 위임된 고시에 의하면 비의도적 혼입 3% 이하의 식품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음.

이에 법률 시행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비의도적 혼입치가 0.9%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,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·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 등).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유전자변형식품등”을 “유전자변형식품등의 비율이 1,000분의 9를 초과하는 식품등”으로 한다.

제4장에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5(식품접객업소의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사용표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·육성된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등(이하 “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”이라 한다)을 원재료로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경우(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·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.

제12조의6(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)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이하 “비유전자변형식품등”이라 한다)은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,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

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.

제101조제2항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

제101조제3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의2(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·육성된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이하 “유전자변형식품등”이라 한다)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조·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(DNA, Deoxyribonucleic acid)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<u>유전자변형 식품등</u> 에 한정한다.	제12조의2(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유전자변형식품등의 비율이 1,000분의 9를 초과하는 식품등</u> 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② ③ (생략)	② 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12조의5(<u>식품접객업소의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사용표시</u>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·육성된 농산물·임산물·축</u>

<신 설>

제101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산물·수산물 등(이하 “유전자 변형농수축산물등”이라 한다)을 원재료로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경우(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·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유전자 변형농수축산물등 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.

제12조의6(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)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이하 “비유전자변형식품등”이라 한다)은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,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.

제10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